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최수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학술정보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9 (팩시밀리) 901-254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4,0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기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최수영.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연구총서 ; 04-19)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61-6 93340

320.911-KDC4

330-95193-DDC21

CIP2004002233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    |
|-------------------------------------|----|
| I. 머리말 .....                        | 1  |
| II.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가격 조정 .....   | 3  |
| 1. 전반적인 가격 인상 .....                 | 3  |
| 가. 가격제정원칙 .....                     | 3  |
| 나. 가격 인상 내용 .....                   | 5  |
| 2. 생활비의 차등 인상 .....                 | 8  |
| 가. 생활비 인상 내용 .....                  | 8  |
| 나. 누진도급제 적용 .....                   | 10 |
| III.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분배제도의 전환 .....  | 13 |
| 1. 국가: 배급제의 실질적 축소 .....            | 13 |
| 2. 공장·기업소: 변수입지표 도입 .....           | 17 |
| 가. 변수입과 변수입지표 .....                 | 17 |
| 나. 변수입지표와 생활비 .....                 | 19 |
| 3. 협동농장: 실적분배원칙 확대 .....            | 22 |
| 가. 분조관리제와 실적분배 .....                | 22 |
| 나. 실적분배 관련 조치 .....                 | 24 |
| IV.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실질소득의 변화 ..... | 27 |
| 1. 〈7·1조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        | 27 |
| 가. 생활비의 상대가격 하락 .....               | 27 |
| 나. 저가 배급제의 포기 .....                 | 30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

|                                |    |
|--------------------------------|----|
| 2. 〈7·1조치〉 이후 인플레이션의 영향 .....  | 33 |
| 가. 시장가격의 지속 상승 .....           | 33 |
| 나. 초인플레이션의 영향 .....            | 35 |
| V.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와 한계 ..... | 39 |
| 1. 개별 주체의 경제생활 .....           | 39 |
| 가. 일부 경제주체의 소득 증대 .....        | 39 |
| 나. 개별 경제주체의 책임 신장 .....        | 42 |
| 2. 북한 경제구조의 변화 .....           | 45 |
| 가.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            | 45 |
| 나. 소득분배구조의 개편 .....            | 49 |
| VI. 북한경제 변화 전망과 대북 정책과제 .....  | 53 |
| 1. 북한경제 변화 전망 .....            | 53 |
| 가. 시장화의 가속화와 계획부문 .....        | 53 |
| 나. 배급제,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      | 57 |
| 2. 대북 정책과제 .....               | 59 |
| VII. 맺음말 .....                 | 63 |
| 참고문헌 .....                     | 67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 69 |

## 표 목 차

|  |    |
|--|----|
| <표 II-1> 7·1조치와 국정가격의 변화 .....         | 7  |
| <표 II-2> 기본생활비의 개정과 인상폭 .....          | 9  |
| <표 III-1>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과거 분조관리제 비교 ..... | 22 |
| <표 IV-1> 농민시장가격의 변화 .....              | 35 |



# 머 리 말

# I

2002년 7월 1일을 기해 북한은 경제관리에서 일대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단행하였다. 가격의 전면적인 인상과 이에 부응하는 생활비의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는 가격체계의 변화를 통해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증대를 이루겠다는 발상을 담고 있다. 이제까지 북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은 물질적 인센티브를 조금 신장시켜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생활비의 차등 인상과 성과급의 실질적인 확대 실시가 시장메커니즘의 도입과 함께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이례적인 조치였다.

<7·1조치>에 대해서는 경제관리를 개선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라는 견해가 있는가하면, 실질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라는 상반된 견해도 있다. 어느 견해가 사실에 근접한지는 시간이 흐른 뒤에 밝혀지겠지만,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북한은 이 조치를 준비했고 향후의 파장에 대해서도 매우 면밀하게 타산했을 것으로 짐

작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이번 <7·1조치>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경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북한 사회는 <7·1조치>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생활, 협동농장, 공장과 기업소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은 더 이상 국가에 의존할 수 없으며, 자기가 번 수입으로 생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원의 배분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메커니즘의 확대와 함께 국가로부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현상 외에도 소득분배구조가 바뀌면서 북한은 과거의 상대적 평등구조에서 불평등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이 글은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를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7·1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가격과 생활비의 인상을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7·1조치> 이후 국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차원에서 진행된 분배제도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7·1조치> 이후 실질소득의 변화를 생활비의 상대가격 하락, 저가 배급제의 포기, 그리고 <7·1조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7·1조치>의 성과와 한계는 제5장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변화,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소득분배구조의 개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북한경제의 전망과 대북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7장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맺음말로 결론을 대신한다.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가격 조정

### 1. 전반적인 가격 인상

#### 가. 가격제정원칙

〈7·1조치〉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기반한 가격결정방식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국가의 결정에 의한 가격체계를 고수해 왔기 때문에 가격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쌀, 임금뿐만 아니라 자재와 설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장 과 기업소에서 과학적인 생산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제 가치대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가격을 옳게 정하는 것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2002년 〈7·1조치〉를 통해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생산자를 우대하는 원칙에서, 이번에 가격을 전반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sup> 사회주의 경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7월부터 북한은 가격을 평균 25배 인상하였으나 가격의 인상폭은 상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정해졌다. 이러한 가격인상의 수준과 제품당의 격차는 아래와 같은 가격제정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식량가격부터 먼저 정하고 이것을 모든 가격제정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은 석탄과 전력과 같은 공업의 근원적 원료를 가격제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 이번의 전반적인 가격개정에서는 사람들의 물질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식량이라는 인식하에 식량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느 면에서나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식량가격을 가격제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농민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곡물의 시장가격이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곡물가격은 여타 상품의 가격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기초가격인 쌀 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생산원가, 국제시장가격, 국내 수급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sup>2</sup>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중요공업제품과 국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전략물자 가격을 다른 제품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민경제의 동력, 연료, 원료로 이용되는 제품과 에너지 관련 교통요금은 상대적으로 크게 인상되었다. 과거 기차비와 버스비가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수입만 가지고는 노동자에 대한 보수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통요금을 현실화

---

<sup>1</sup> 조선로동당출판사(2002.7),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KDI 북한경제리뷰』, 제5권 제1호 (2003.1), p. 40.

<sup>2</sup>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하였다고 한다. 대중소비품과 식료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개정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북한은 각종 기준가격을 전부 없애고 모든 상품 가격을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시켰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7·1조치>와 관련해서 가격은 생산자를 우대하는 원칙에서 경제적인 실리를 따지면서 사회적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같은 가격제정의 기준과 원칙이 실제로 모든 상품가격에 어느 정도로 잘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 나. 가격 인상 내용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북한이 <7·1조치> 당시 새로 정한 국정가격은 <표 II-1>에 나타나 있다. 먼저 모든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식량가격은 400~550배 정도 인상되어 다른 어떤 품목에 비해서 그 인상폭이 너무나 크다. 쌀 1kg의 국정가격은 종전 8전에서 44원으로 550배, 옥수수가격은 6전에서 24원으로 400배 인상되었다. 생채 돼지고기는 kg당 10원에서 110원으로 11배, 청어는 10원에서 100원으로 10배 올라 고기와 생선류의 인상폭은 다른 제품에 비해 가장 낮았다. 양념류의 경우 인상폭은 45~85배에 이르고 있어 곡물 다음으로 인상폭이 크다. 소주도 1리터(ℓ)에 50전에서 43원으로 86배나 올랐다.

북한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 대중소비품과 식료품의 가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육어류의 가격 인상폭이 낮은 반면 양념류와 주류의 인상폭이 높은 것은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음은 분명하지만, 공급이 한정되어

있음을 가정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육어류에 대한 수요는 낮고 양념류 및 주류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중소비품(공산품)의 경우 남자 운동화는 1켤레에 180원으로 51배나 인상되었다. 비누는 종류에 따라 그 인상폭이 크게 차이가 나서 세수비누는 20원으로 7배 인상된 반면, 세탁비누는 15원으로 올랐지만 그 인상폭은 38배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세수비누보다 세탁비누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훨씬 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인상폭을 높게 책정했다는 연료 및 에너지의 경우, 석탄은 톤당 34원에서 1,500원으로 44배, 전력은 kWh당 3.5전에서 2.1원으로 60배, 휘발유는 리터당 40원에서 2,800원으로 70배 인상되었다. 평양~청진간 철도요금은 17원에서 590원으로 35배,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10전에서 2원으로 각각 20배 올랐다. 주택(60m<sup>2</sup>) 사용료는 1개월에 78원, 난방비는 1개월에 175원으로 현실화되었다.

한편 북한은 상품가격을 고정시키지 않고 수급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계속 조절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연료, 전력, 자재 등 생산원가에 직접 반영되는 가격, 그리고 쌀값이나 주택비 등 인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가격들은 <7·1조치> 이후 일정 기간 초기에 설정한 그대로를 유지하여 일체 변동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그러나 실제 이들 품목의 국정가격도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쌀값은 지역에 따라서 kg당 44원에서 46원 등 조금씩 편차를 보이고, 북한에 지원된 쌀이 46원에 팔리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sup>4</sup>

<sup>3</sup> 국가가격제정국 강경순 종합처장과의 인터뷰기사, 『조선신보』, 2003년 3월 14일.

<sup>4</sup> 통일부는 대북 식량차관 분배현장을 확인한 결과 쌀이 1kg당 46원에 북한 주민들에게 유상분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3년 10월 9일.

<표 II-1> 7·1조치와 국정가격의 변화

|     | 품목     | 단위      | 개정전      | 개정후    | 인상폭 |
|-----|--------|---------|----------|--------|-----|
| 곡물  | 쌀      | kg      | 8전       | 44원    | 550 |
|     | 옥수수    | kg      | 6전       | 24원    | 400 |
|     | 콩      | kg      | 8전       | 40원    | 500 |
| 육어류 | 돼지고기   | kg(생체)  | 10원      | 110원   | 11  |
|     | 청어     | kg      | 10원      | 100원   | 10  |
| 양념류 | 된장     | kg      | 20전      | 17원    | 85  |
|     | 간장     | kg      | 20전      | 16원    | 80  |
|     | 콩기름    | kg      | 4원       | 180원   | 45  |
|     | 조미료    | kg      | 5원       | 300원   | 60  |
| 주류  | 소주     | 1ℓ      | 50전      | 43원    | 86  |
| 공산품 | 남자 운동화 | 켤레      | 3.5원     | 180원   | 51  |
|     | 세수비누   | 개       | 3원       | 20원    | 7   |
|     | 세탁비누   | 개       | 40전      | 15원    | 38  |
| 연료  | 석탄     | 톤       | 34원      | 1,500원 | 44  |
|     | 전력     | 1000kWh | 35원      | 2,100원 | 60  |
|     | 디젤유    | 리터(ℓ)   | 40원      | 2,800원 | 70  |
|     | 휘발유    | 리터(ℓ)   | 40원      | 2,800원 | 70  |
| 교통비 | 철도여객   | 평양→청진   | 17원      | 590원   | 35  |
|     | 시내버스   | 1회      | 10전      | 2원     | 20  |
| 주거비 | 주택사용료  | 60㎡/월   | 수입의 0.3% | 78원    | -   |
|     | 난방비    | 60㎡/월   | -        | 175원   | -   |

자료: 북한 내부자료; 조선로동당출판사(2002.7),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pp. 42-43; 일본 방문 중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이 비공개 세미나(2002.9.2)에서 강연한 내용, 『KDI 북한경제리뷰』, 제4권 제10호 (2002.10), pp. 46-47;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 2. 생활비의 차등 인상

### 가. 생활비 인상 내용

<7·1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가격 인상과 함께 북한은 생활비(임금)도 대폭 인상하였다. 노동자의 생활비는 평균 18배 정도 높아졌으며 금액으로는 2,000원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생활비는 노력자 2명을 포함하는 4인 가족이 새로운 가격체제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수입을 월 4,000원 정도로 계상할 경우, 노력자 1사람당 수입이 월 2,000원 정도가 되도록 산출된 것이다.

북한은 가격개정에 따르는 생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생산자를 우대하는데 유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생활비의 인상폭은 직종과 경제부문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다.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의 기본생활비는 19배로 높아진 반면, 비생산부문에 종사하는 사무원과 지도·관리일꾼들의 생활비 인상폭은 17배 정도로 정해졌다. 중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생활비 인상폭은 20~25배 정도로서 광산노동자(탄부)의 생활비는 월 6,000원까지 인상되었다. 또한 노동자의 생활비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농민들의 보수도 생산자우대의 원칙에서 월단위로 환산할 경우 2,300원 정도가 되도록 수매가격기준과 각종 지표를 정했다고 한다.<sup>5</sup> 즉 산업건설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요구를 반영하여 생산부문 노동자의 생활비와 농민들의 소득을 여타 부문에 비해 높게 설정한 것이다.

---

<sup>5</sup> 조선로동당출판사(2002.7),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p. 43.

<표 II-2> 기본생활비의 개정과 인상폭

|                         | 개정전  | 개정후      | 인상폭    |
|-------------------------|------|----------|--------|
| 노동자, 사무원의 평균            | 110원 | 2,000원   | 18배 정도 |
| 생산부문노동자 및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      |          | 19배 정도 |
| 비생산부문 (사무직, 관리직)        |      |          | 17배 정도 |
| 중노동부문노동자 (탄부 등)         |      | (6,000원) | 20~25배 |

자료: 조선로동당출판사(2002.7),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pp. 42-43.

이번 생활비 인상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치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상된 생활비 수준은 과거와 달리 그것이 꼭 보장된다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헌도와 소속 단위의 실적에 따라 기본생활비를 웃돌거나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평균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시책과 결부시켜 생활비의 계산과 지불 방식을 과감하게 전환한 것이다. 노동에 의한 분배를 비롯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공간을 네거티브 방향으로도 작동(Negative Incentive의 활용)시킨다는 것은 종전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조치라 할 수 있다.<sup>6</sup>

<sup>6</sup> 강일천·공성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통일문제연구』, 제15권 2호 (2003 하반기), p. 137.

## 나. 누진도급제 적용

북한에서 생활비 지불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그에 따라 받는 노동보수는 도급생활비와 정액생활비이다.<sup>7</sup> 도급지불제는 일정한 질을 가진 생산물의 생산량 또는 작업량에 따라 노동에 대한 보수를 평가·계산한다. 따라서 도급지불제는 노동의 결과를 정확히 계산·평가할 수 있는 부문, 즉 노동정량을 정해주고 그 수행정도를 계산·평가할 수 있는 부문에 적용된다. 한편 정액지불제는 근로자들의 직제와 자격급수, 직종별 기능등급에 따르는 단위시간당 생활비 기준액을 생활비표에 미리 정해놓고 일한 시간에 따라 노동보수를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생활비 인상과 관련하여 북한은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생산자를 우대해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요구가 정확히 관철되도록 했다고 한다.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평균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르는 분배를 관철하기 위해 생활비 지불형태에서 도급지불제를 널리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생산력 발전수준이 아직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고 노동에서의 차이도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물의 분배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힘든 일을 한 사람과 험한 일을 한 사람, 기술기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꼭 같은 보수를 주는 평균주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집단의 노력적 열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다.<sup>8</sup> 도급지불제는 노동의 결과를 질적, 양적으로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생활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

<sup>7</sup> 북한의 생활비 지불형태에 대해서는 『경제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92-193 참조.

<sup>8</sup> 『조선신보』, 2002년 7월 19일.

배원칙의 요구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북한은 과거 정액지불제를 적용하던 부문과 직종에서도 최대한으로 도급지표의 도입을 지향하는 것 같다.<sup>9</sup> 예를 들어 과학자의 연구 성과가 생산에 도입됨으로써 증산된 생산물이나 절약된 비용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지불하는 것과 같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성향상공현도’와 같은 지표를 설정하여 연구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는 당연히 정액생활비와 도급생활비의 배합을 전제로 적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도급지불제의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북한은 특히 채취공업 및 금속공업과 같은 중노동부문에 대하여 ‘누진도급’을 도입하여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탄부들의 생활비가 대폭 인상되었다. 생산계획을 항상 넘쳐 수행하는 그의 중대에서는 탄부들이 평균 3만원의 생활비를 받게 되었다. 이곳 탄광에서는 탄부가 받은 생활비의 최고액이 6만원이 넘었다”고 자랑하면서 “탄부들이 받게 되는 수 만원의 생활비는 ‘누진도급’이라는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sup>10</sup> 여기에서 ‘누진도급’이란 정해진 노동정량 범위 안에서는 고정된 도급단가를 적용하고 노동정량을 초과 수행한 몫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높아진 단가에 의해 생활비를 계산해 주는 누진도급지불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

<sup>9</sup>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1),” 『KDI 북한경제리뷰』, 제4권 제10호 (2002.10), p. 38.

<sup>10</sup> 이 제도에 따르면 정량계획의 70%를 달성하면 기본생활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 석탄을 캐면 ‘누진생활비’가 가산되며, 계획을 120% 이상 수행한 다음부터의 생산실적에 대해서는 5배의 ‘누진생활비’가 지급된다. 따라서 매달 계획을 300%로 수행한다면 기본생활비 이외에 2~3만원의 ‘누진생활비’를 받게 된다. 『조선신보』, 2002년 10월 11일.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분배제도의 전환

### 1. 국가: 배급제의 실질적 축소

북한은 〈7·1조치〉로 인한 물가 조정 및 생활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배급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국가 시책을 고수하기 위하여 북한은 쌀에 대한 배급표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sup>11</sup> 즉 〈7·1조치〉를 통해 쌀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 시세를 반영해 대폭 인상했지만 식량배급표 제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식량배급제를 명목상으로 유지해 왔다.

식량배급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는 쌀의 수매가격을 시장가격에 접근시켜 인상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농민들은 쌀을 농민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인상된 수매가격으로 국가에 수매하여도 별다른 손실을 입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농민들에게 쌀을 비롯한 일정량의 알곡을 국가

<sup>11</sup> 박순성, 『북한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p. 132.

에 판매해야 할 행정적 의무와 함께 물질적, 경제적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수매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북한은 국가에 의한 알곡수매를 가능케 하고 식량공급체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이 쌀을 비롯한 주요 알곡과 기초식품에 대한 <배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분명하다.<sup>12</sup>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속 장악도 하고 책임도 진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배급제도, 특히 1946년부터 실시해 온 낮은 가격에 의한 식량공급제(배급제)는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7·1조치>를 시행하면서 “누구든지 자기가 번 돈으로 쌀을 제 가격으로 사먹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3</sup> 바꾸어 말하면 식량배급제를 유지하면서도 과거와는 달리 국가는 오직 공급만 책임지고 구매수준과 구매량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이다. 국정가격(배급가격)이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인상)되었다는 것은 배급제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배급제 폐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북한은 2002년 초 함경북도 청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식량을 제외한 생활필수품의 배급을 폐지하는 실험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sup>14</sup> <7·1조치> 이후 배급제가 폐지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식량배급표는 여전히 발급되고 있어 배급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2003년도 대북 식량차관 제공시 분배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북

---

<sup>12</sup> 『조선신보』, 2003년 1월 22일.

<sup>13</sup> 조선로동당출판사(2002.7),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p. 43.

<sup>14</sup> 『세계일보』, 2002년 7월 20일.

한은 주민들에게 우리 쌀을 kg당 46원에 판매하면서 1인당 하루에 300~380g, 월 2회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들어 <7·1조치> 이후 북한이 일부 유지해오던 식량배급제도를 전면 폐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정부의 일부 관리와 특급기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식량 배급제를 폐지하였지만 여전히 당·정·군 핵심계층에 대해서는 배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 7·1조치 이후 식량 소요량의 50%는 배급표를 발급받아 국정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했고 나머지 50%를 개인이 농민시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했었다”며 “최근에는 국정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했던 50% 분량까지도 개인이 자력으로 조달토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sup>15</sup> 또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일반 주민의 배급제를 폐지한 이래 최근 그 범위를 정부 일부관리, 특급기업소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핵심계층에 대한 배급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sup>16</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7·1조치> 이후 배급제를 꾸준히 손질해 왔으며 배급제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7·1조치>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한 배급제도의 물리적인 축소 시도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공적 배급체계는 공급부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주민들은 농민시장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조달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7·1조치>로 인한 국정가격(배급가격)의 시장가격화가 가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배

---

<sup>15</sup> 『연합뉴스』, 2004년 4월 8일.

<sup>16</sup> 『연합뉴스』, 2004년 4월 21일.

급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국정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배급제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북한이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에 대한 저가의 공급정책을 포기하면서 배급제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것은 지난 시기 이 제도로 인해 나타난 부정적 현상에 대한 반성의 표출이다.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부담 하에서는 하루만 일하면 한달치 식량을 사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생산활동에서 열성을 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많은 가정주부가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특히 최근에는 국가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직업까지 버리고 장사나 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채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었다.

배급제도의 실질적인 축소로 인한 가계 부담의 대폭 증대는 북한 문건에도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은 “지난 시기, 노동자, 사무원의 실질 생활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3.5% 밖에 안되었다”면서 “앞으로는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수매한 식량값에 일정한 부가금을 청구해 지금의 식량공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실질 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가 된다”고 한다.<sup>17</sup> 배급제도의 실질적 축소로 북한에서는 국가사회적 시책에 의한 분배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개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

<sup>17</sup> 조선로동당출판사(2002.7),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p. 43.

## 2. 공장·기업소: 변수입지표 도입

### 가. 변수입과 변수입지표

북한은 <7·1조치> 이전까지 생산의 절대량을 추구하는 국면에 적합한 지표라 할 수 있는 현물지표와 생산액지표에 의한 계획수행률을 기준으로 삼아 기업경영결과를 평가해 왔다. 그러나 2002년 7월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하나로 지표체계와 내용을 바꾸어 기업의 관리·운영에 변화를 도모하였다. 기업실적 평가에 실리와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변수입지표’를 도입해 기업경영과 분배측면에서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변수입은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전』(1985년)에는 변수입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재정금융사전』(1995년)에 따르면 변수입은 “국영농목장을 비롯한 결산분배를 하는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 창조된 이윤과 노동에 의한 분배원천으로 구성되어있다”<sup>18</sup>고 쓰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국영농목장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던 변수입 체계를 <7·1조치> 이후 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측면에서 변수입이란 “판매수입에서 생활비를 댄 원가를 공제한 것,”<sup>19</sup> 즉 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생산비(생활비 제외)를 제한 비용이다.<sup>20</sup> 따라서 변수입은 “총수입에

<sup>18</sup>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 538.

<sup>19</sup>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경제연구』, 2003년 제3호, p. 28.

<sup>20</sup> 가치측면에서 보면 변수입은 인민경제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새로 창조된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것이다. 새로 창조된 가치(변수입) 중에서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몫이 생활비이며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해 창조된 몫이 사회순소득으로 이것이 국가와 기업소 자체에 분배될 몫이다.

서 원료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감가상각비, 일반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그 나머지 부분이란 “생산자들의 생활비, 국가기업이득금, 기업소 이득금”<sup>21</sup>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변수입은 국가의 몫인 국가기업이득금과 기업소 몫인 생활비와 기업소이득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이 <7·1조치>의 하나로 ‘변수입지표’를 도입한 것은 경영관리 측면에서 경영효율화를 통해 생산을 정상화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변수입지표’의 도입에 따른 변화로는 기업의 계획수행평가 체계가 물량생산 위주에서 채산성 위주로 달라졌으며 기업이 올린 성과 중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변수입지표’는 생산액 계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수입계획과 변수입 계획을 받으며 그 수행정형에 따라 계획실행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변수입지표의 효과는 변수입을 늘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판매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판매수입지표의 효과와 동일하다. 여기에서 판매수입은 현물지표별 계획에 따르는 판매수입은 물론 계획외 수입 등 경영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입을 포함한다. 이렇게 계획외 생산활동과 그로부터의 수입을 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계획수행은 물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추가생산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매수입에 계획외 수입도 포함시키면 현물지표별 계획은 무시하고 이윤이 많이 나는 제품에 치우치는 편향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변수입 계획수행 평가에서는 현물지표별 계획수행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2</sup> 변수입의 경

---

<sup>21</sup>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변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3년 제1호, p. 38.

우 생산비(생활비 제외)가 차감된 후의 결과라는 점에서 변수입지표는 판매수입지표와 달리 원가절감의 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수입지표의 도입은 판매수입의 증대와 원가절감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sup>23</sup>

#### 나. 변수입지표와 생활비

‘변수입지표’를 도입한 또 다른 이유는 분배구조의 변화를 통해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노동보수의 인센티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가 정한 생활비등급제와 노동수행 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지불받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노동실적에 따라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생활비는 비용(원가)으로서 고정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지불되고 있어서 분배의 평균주의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변수입지표’의 도입은 변수입에 기초한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기본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생활비를 실적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변수입은 생활비, 국가분배의 몫(국가기업이익금), 기업소자체 분배의 몫(기업소이익금)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진다. 이것은 생활비가 경제적 성격에서 벗어나 국가분배, 기업소 자체의 분배와 동일한 입장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수입지표’의 도입은 국가, 기업, 노동자들이 동일한 입장에서 위험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그렇지만 국가분배의 몫, 기

<sup>22</sup>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p. 28.

<sup>23</sup>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변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p. 39.

업소자체 분배의 몫은 국가정책에 의해 결정·조정되며, 이들 사이의 배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납부가 기업소에 대한 배분보다 우선적이다. 따라서 변수입에서 국가수납분을 지불한 후 그 나머지가 기업소 자체 몫과 생활비로 배분된다.<sup>25</sup>

변수입지표의 도입과 관련하여서 기업소 자체 몫과 생활비의 배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우선순위에 다소간 상충되는 서술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변수입의 분배 방식이 부문별, 기업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실지 벌어들인 수입에서 국가납부와 기업소가 쓸 자금을 확정하고 나머지로 생산자들의 생활비와 장려금, 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up>27</sup>라고 한 것이나, 군고구마·군밤 장사를 하는 낙연합작회사에서 “나라에 바치는 이득금과 기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액수를 정하고 그보다 많은 매상고를 달성하면 종업원의 보수에 돌리도록” 했다는 경우는 기업소 자체 몫을 우선시 하는 경우이다. 단고기를 파는 의암식당에서 “매상고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나라에 상납하고 나머지를 종업원의 로임과 식당 운영에 돌리게 된다”<sup>28</sup>는 것은 국가납부와 종업원의 생활비를 우선

<sup>24</sup> 김상기, “변수입지표에 대한 소고,” 『KDI북한경제리뷰』, 제6권 제8호 (2004.9), pp. 6-7.

<sup>25</sup> 국가기업이득금은 기업소 제품판매 수입실적에 일정 납부율(판매수입계획에 의한 국가기업이득금 납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변수입이 아닌 판매수입의 일정비율을 납부방법으로 채택한 것은 기업의 원가를 감안하지 않은 판매수입을 사용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서 안정적이기에 취한 조치로 보인다. 기업소이득금은 생산의 확대와 기술발전, 종업원들의 문화후생사업 등에 사용된다. <7·1조치>에 따라 기업소는 종래 감가상각비를 국가에 납부하는 대신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소이득금(기금)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sup>26</sup> 중국의 이윤유보제, 이윤계약제 등의 경우, 기업의 자율경영 능력, 손익 실태, 부문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로 상이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러한 차별 방식을 통일하게 일원적 조세체계의 이전이 1983년부터 도입된 이개체제이다.

<sup>27</sup>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p. 34.

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경우이다.<sup>29</sup>

노동자에 대한 생활비는 변수입 계획을 얼마나 실행했는가 하는 변수입 계획수행률에 따라 결정된다. 즉 생활비 몫은 종업원 한 사람 당 변수입 기준에 변수입 계획실행률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생활비도 변수입의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종래 생산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 결국 ‘변수입지표’의 도입은 노동자들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생활비를 엄격히 계산함으로써 분배의 평균주의를 배제하고 소득분배구조의 전환을 가져온 조치라 할 수 있다.

한편 ‘변수입지표’에 의한 생활비 지불은 그동안 시행되었던 추가적인 노동보수인 상금, 장려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7·1조치> 이후 생활비가 물질적 유인의 수단이 되면서 과거 물질적 자극으로서 존재했던 상금, 장려금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추가적인 노동보수로서의 역할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

<sup>28</sup> 『조선신보』, 2003년 10월 15일.

<sup>29</sup> 『조선신보』, 2003년 10월 22일.

### 3. 협동농장: 실적분배원칙 확대

#### 가. 분조관리제와 실적분배

북한은 1996년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분조를 7~8명 내외로 축소하여 운영해 왔다. 그렇지만 이후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보고나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실험적으로 도입된 이후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이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동기유발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분조관리제 하에서도 목표생산량 책정 수준은 여전히 높았으며 농업생산을 위한 물적 토대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분조가 초과 생산을 구현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표 III-1>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과거 분조관리제 비교

|           | 과거 분조관리제<br>(1966~1995)                         | 새로운 분조관리제<br>(1996년 이후)                    |
|-----------|---|--|
| 분조<br>구성  | 농장원들의 능력과 요구를 고려하여 老·壯·靑을 배합하는 원칙에서 10~25명으로 구성 | 주로 가족, 친척 단위를 위주로 7~8명으로 구성                |
| 생산<br>계획  | 매년 국가적인 생산목표에 따라 각 농장들에 지표를 설정                  | 지난 3년간의 평균 수확고와 1993년 이전 10년간의 평균 수확고의 평균치 |
| 초과분<br>처분 | 초과생산물은 국가에서 수매<br>(예: 쌀 1kg 60전, 옥수수 1kg 50전)   | 초과생산물은 현물로 농장원(분조)에게 분배되고 자유롭게 처분          |

자료: 『조선신보』, 1997년 7월 16일.

그렇지만 2002년 초부터 신의주와 온성에서는 3~4가구를 한 분조로 묶어 농사를 짓게 하고 목표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분조에 대해서

는 자체 분배토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다시 분조원 규모를 4~5명의 가족 단위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sup>30</sup> 이와 같이 북한은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유명무실해진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1조치> 이후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전면적인 시행은 협동농장 농민에 대한 분배를 실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7·1조치> 이후 실적분배원칙을 하급 조직까지 확대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노동력 지원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1</sup> 『조선신보』는 <7·1조치>로 ‘일한 만큼, 벌어들인 만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정착돼 연말 결산분배에서 최하위단위인 분조도 생산실적에 따라 분배를 받고 있으며 분조간에도 분배 몫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7·1조치> 이후 국가에서 채소와 같은 생산품을 질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눠 수매하면서 농민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품질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7·1조치> 이전에도 각 협동농장마다 1년간 총생산량에서 국가 납부금(세금)과 생산비 등을 공제한 후 생산실적에 따라 작업반 별로 연말에 분배 몫을 배분해왔으나 분조에 대해서는 ‘평균주의 원칙’을 견지했었다. 따라서 협동농장원의 경우, 농장에 나가 일을 잘했건 못했건, 가동일수만 보장되면 협동농장은 1년 식량을 가족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완전히 다 지급했었다. 그러나 결산분배 방법이 바뀐에 따

<sup>30</sup> 권태진, “북한의 농업실태와 농업발전 전략,”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협력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2003.3.11) 자료집, p. 34.

<sup>31</sup> 『조선신보』의 자매지인 월간 『조국』(2004.2) 인용, 『조선신보』, 2004년 1월 23일.

라 생산의욕이 증진되고 생산품의 질을 높이려는 의식이 크게 높아져서 농민들은 국가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과 지원노력 등 각종 생산비용을 줄여 분배 몫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실적분배 관련 조치

실적분배원칙의 확대와는 다소간 성격을 달리하지만 북한에서는 개인경작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경작의 모범사례로서 몽골포협동농장(황해남도 룡연군)에서는 ‘고정포전’(개인경작지) 관리방식을 시행한 결과 퇴비(거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 옥수수가 증산되었다고 한다.<sup>32</sup> 몽골포협동농장에서는 농장 여맹원 1인당 밭 300평을 배정하고 경쟁을 유도한 결과 가족들까지 동원되어 자신이 관리하는 밭을 개량하기 위해 객토작업을 하는 등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협동농장에서는 농장이 보유한 토지를 개인에게 빌려주고 세금을 받는 ‘개인경작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www.goodfriends.or.kr)에 따르면 함경북도 온성군과 새별군 등 일부 지역에서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에 걸쳐 협동농장에서 개인에게 경작지를 분배하고 상·중·하로 나눠 세금을 받는 개인경작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sup>33</sup> 북한 당국이 작년 가을에 미리 토지세를 거두고 올해 3월부터

<sup>32</sup> 북한의 여성 월간지 『조선여성』(2002.8) 인용 보도, 『연합뉴스』, 2002년 9월 25일.

<sup>33</sup> 좋은벗들 소식지에 따르면 “온성군 상화 탄광이 운영하는 집단농장은 1인당 120평씩 밭을 나눠주었으며 온성군 중성에 있는 ‘4·25 담배농장’에서도 3~4가구를 1개 조로 묶어 토지를 분배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한다. 한편 좋은벗들 관계자는

꾸준히 직장에 출근하는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00평씩 유휴 농경지를 분배했다는 것이다.

김진경 총장은 “지난 1일(2004년 3월)부터 북한 당국에서 토지를 개인이 임대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북한주민들은 농기구도, 비료도 살돈이 없는데다 협동농장 시스템에 익숙해 호응이 저조하다”고 말했다.<sup>34</sup>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3월 1일에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가 실시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협동농장 분할 임대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정황은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조치가 북한 전역에서 실시됐는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실시됐는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sup>35</sup>

이와 같이 일종의 ‘가족영농제’라 할 수 있는 개인경작의 시범 실시, ‘가족청부제’라 할 수 있는 협동농장 토지의 개인 임대 등은 북한 농업분야에서도 자본주의식 이윤 추구하고 경쟁원리가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도 개혁·개방 초기에 ‘농가청부제(農家請負制)’를 채택하여 토지와 자재를 농민에게 임대함으로써 농민

---

이와 관련, “세금은 가장 좋은 토지를 기준으로 북한돈으로 평당 12원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개인에게 분배한 토지 면적은 협동농장마다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이 토지를 받더라도 소나 농기구, 비료가 없어 경작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놀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탈북자들은 함북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인경작제가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12월 5일.

<sup>34</sup>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이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베를린 자유대 통일포럼에서 주장한 내용, 『연합뉴스』, 2004년 3월 15일.

<sup>35</sup>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협동농장 토지에 대한 개인임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만 농민이 비료나 농기계를 개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만 현재 북한사회의 변화로 볼 때 이 같은 중국식 개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 생산의욕을 자극, 농업증산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협동농장에서 개인경작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임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7·1조치> 이후 농민에 대해서도 실적에 따른 분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실질소득의 변화

### 1. 〈7·1조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 가. 생활비의 상대가격 하락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노동자, 사무원의 생활비를 평균 18배 인상하였다. 이 사실만 두고 본다면 주민들의 수입이 늘어나 구매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생활비의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질구매력은 〈7·1조치〉에 따른 가격과 생활비의 변화폭을 비교해서 평가해야 한다. 생활비 인상에 따른 화폐소득의 증가가 실질구매력의 향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활비의 인상폭이 가격의 인상폭보다 더욱 커야만 한다.

이번 조치에서 북한은 “전 품목의 가격을 종전보다도 평균 25배 정도 끌어올리기로 개정하고” 동시에 “모든 상품의 가격을 개정한 데 맞게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평균 18배 정도 인상하였다”고 한다.<sup>36</sup> 이

<sup>36</sup> 조선로동당출판사(2002.7),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를 통해 평균적인 의미에서 전반적인 가격의 인상폭이 생활비의 인상폭을 웃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비해 물가 대비 생활비(임금)의 상대가격이 <7·1조치>의 결과 하락한 것이다. 생활비의 상대가격 하락이란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단순 계산의 경우 실질소득은 <7·1조치>를 통해 평균 28% 정도 감소한 셈이 된다.<sup>37</sup> 생활비가 인상됨으로써 화폐(명목)소득은 증가하였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이다.

생활비의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주민들의 실질소득 감소 정도는 개인 및 가계의 지출구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식비 지출의 비중이 클수록 실질소득의 감소 정도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곡류(쌀, 옥수수, 콩)의 국정가격 인상폭 400~550배는 다른 어떤 품목의 인상폭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 북한 주민들에게는 먹는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7·1조치>에 따른 실질소득의 평균적인 소폭 감소는 오히려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북한 주민들의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식비, 특히 주식에 대한 지출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감소는 평균 이상으로 매우 높아지게 된다.

상품종류에 따른 국정가격의 인상폭은 육어류를 제외한다면 모두 평균적인 인상폭을 상회하고 있다. 곡물류를 제외하면 인상폭은 주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의류, 양념류, 연료, 공산품, 공공요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공공요금 및 공산품보다는 의식주와

---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pp. 40-42.

<sup>37</sup> 국정가격 인상폭을 100으로 나타낸다면 생활비 인상폭은 72가 된다. 따라서 이 지수의 차이인 28(%)이 실질소득에서의 감소분이다.

관련된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폭을 크게 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대한 국정가격의 인상폭이 전 품목 평균 인상폭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구매력의 감소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비의 차등인상으로 탄부처럼 중노동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생활비의 상대가격이 거의 고정되어 실질소득에는 변함이 없다. ‘누진노급’에 따라 기본생활비 이외의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부 노동자는 생활비의 상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질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의식주에 대한 지출 비중이 낮아야만 실질구매력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7·1조치>로 생활비가 인상됨으로써 주민들의 화폐소득이 늘어나 명목적인 구매력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가격의 평균 인상폭이 생활비의 평균 인상폭을 상회함으로써 실질소득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주민들의 실질구매력 또한 감소하였다. 평균적 의미에서 실질소득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식주 관련 상품, 특히 쌀과 같은 주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책정됨으로써 실질소득은 실제로 평균 이상으로 감소한 것이다.

결국 <7·1조치>로 인한 생활비의 인상은 특수 직종에 종사하거나 고급 기술을 가진 극소수의 노동자를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구매력 저하를 가져와 이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7·1조치>로 생활비는 인상되었지만 생활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사실상 이전보다 복지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생활비의 인상은 그야말로 외형적인 인상에 그치고 만 것이다.<sup>38</sup>

## 나. 저가 배급제의 포기

<7·1조치>에 따라 북한은 종전에 실시해 오던 저가에 의한 식량 공급제를 바꾸어 누구든지 자기가 번 돈으로 쌀을 제 가격으로 구입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노동자, 사무원의 실질 생계 비에서 차지하는 식량값의 비율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의식주 공급제의 경우, 저가의 공급정책을 포기하면서 실질적인 축소를 통해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식주 공급제는 북한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이자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이의 실질적인 축소가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과거 북한의 식량배급은 표준임금과 마찬가지로 노동부문의 체력 소모에 따라 우선 배급하고, 이러한 분배 기준을 중심축으로 여기에 비노동층의 연령과 직종을 대입한 것으로 보인다.<sup>39</sup> 그렇지만 <7·1조치> 이후에는 쌀 1kg의 국정가격이 44원으로 550배에 인상되면서 북한의 식량배급은 공적부조의 기능을 대폭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은 식량가격의 인상폭이 생활비(임금) 인상폭보다 커서 주민들은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식량구입을 위해서는 지출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의복의 경우 과거에는 대상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했지만 국가는 무료 혹은 염가로 제공해 왔다.<sup>40</sup> 의류공급은 분배대상에 따른 근무

<sup>38</sup> 이철수, “7·1조치와 북한사회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2003 북한 및 통일 관련 신진연구 논문집(Ⅱ)』 (서울: 통일부, 2003.12), p. 255.

<sup>39</sup> 위의 글, p. 242.

<sup>40</sup> <7·1조치> 이전 북한은 노동자에게는 1년에 1~2벌의 작업복을 무상으로, 학생에게는 1년에 2벌 염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기사와 교원에게는 3~4년에 양복 1벌을 염가로 지급하고, 기업소·공장·당의 상급에게는 2년에 양복지 1벌을 반값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하였다.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반복지의 북한』 (서울: 청목출판사, 2003), p. 137.

의복을 공급기준의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생활의복의 경우에는 염가 공급을 추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의류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재 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공급가격을 현실화하였다. 남자양복은 75배(90원에서 6,750원), 겨울내의는 80배(25원에서 2,000원)로 올라 개인의 능력과 수입에 따라 의류의 소비수준이 달라지게 되었다.<sup>41</sup>

한편 주택의 경우 공급측면에서는 <7·1조치> 전후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통상 주택공급은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달리 공급되어 왔으며 <7·1조치> 이후에도 이런 공급원칙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주택 사용료의 인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주택 사용료는 <7·1조치> 이전에는 월 생활비(수입)의 0.3%를 부담했으며,<sup>42</sup> 협동농장원의 경우 무상으로써 국가가 임대료를 보조해 주었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평양을 기준으로 한 세대 60㎡ 주택의 월 사용료는 78원(1㎡당 월 1.2원), 난방비는 175원으로 인상되어 집 한 채의 사용료가 겨울철에는 한 달에 수백원에 달하게 되었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식량 및 소비품 가격과 집세 등을 인상하여 배급제를 사실상 축소하고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려 하였다. 의식주의 국가배급제하에서 국가는 식량, 주택 등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7·1조치> 이후 식량 및 집세와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배급제가

<sup>41</sup>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15권 2호 (2003 하반기), p. 109.

<sup>42</sup> 북한의 노동자나 사무원들이 부담하는 주택사용료는 생활비 지출에서 0.3%에 지나지 않으며 연료비 및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도 세대당 생계비의 3% 내외라 한다.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45년~1982년)』 (서울: 북한연구소, 1983), p. 1044.

사실상 무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은 공식적으로 배급제나 사회보장제의 축소나 폐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부담(역할)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7.1조치> 이전에는 쌀 가격이 근로자의 실질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에 국가는 주민들의 식량공급을 보조하는데 일 년에 수십억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국가는 이번 <7.1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의식주 공급의 책임자라는 부담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7.1조치>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유지해 온 의식주 관련 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배급 및 저가의 공급정책을 실제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식주 관련 국가보조 또는 배급제의 축소는 결국 주민들의 실질소득의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7.1조치>는 국가부담을 축소함으로써 개인부담의 증대를 수반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에 의한 분배부분보다 국가적 및 사회적 시책에 의한 분배부분이 체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인 모습으로 보고 그를 위한 조치를 계통적으로 실시하여 온 종래의 경위와 대비해 볼 때 전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sup>43</sup> 결과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소득격차는 의식주에 대한 차등 소유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sup>43</sup>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조치에 대한 잠정적해석(1),” p. 41.

## 2. <7·1조치> 이후 인플레이션의 영향

### 가. 시장가격의 지속 상승

농민시장과 같은 사적 상업유통망에 대한 의존이 높은 북한 주민들은 국정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의 변동에 주목하게 된다. 시장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실질소득과 구매력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격과 생활비의 인상을 전면적으로 단행한 <7·1조치> 이후 북한의 시장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2003년 들어와서 시장가격의 상승폭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 2002년 2월 대비 2003년 2월의 농민시장 물가는 평균 2.5배 상승하였다.<sup>44</sup> 쌀은 kg당 48~55원에서 130~150원으로, 옥수수는 kg당 20~32원에서 75~85원으로, 돼지고기는 kg당 160~180원에서 360~380원으로 각각 2~3배 올랐다. 비누(450g) 1개는 60~70원에서 165~175원으로 올랐고, 담배(국산) 1곽은 45~50원에서 70~80원으로 올랐다.

이러한 시장가격의 상승세는 2004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거리시장에서의 곡물가격은 2003년에 비해 30~60% 올라 쌀(백미)의 한도가격이 240원으로 60%, 옥수수는 30% 상승하였고, 돼지고기는 500~750원에 거래되고 있다.<sup>45</sup> 8월 현재 500원이라고 알려진 쌀 가격은 이것이 시장가격인지 한도가격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시장가격인 것 같다.<sup>46</sup> 더구나 탈북자 단체가

---

<sup>44</sup>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p. 111.

<sup>45</sup> 『도쿄신문』, 2004년 6월 16일 재인용, 『연합뉴스』, 2004년 6월 16일.

<sup>46</sup> 『세계식량계획(WFP) 주간보고서』, 33호 (2004.8.13) 재인용, 『연합뉴스』, 2004년 8월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의 청진지역 장마당에서 쌀은 900원(kg), 식용유 2,000원(kg), 돼지고기 2,700원(kg), 계란 1개 100원, 설탕 900원(kg)에 거래되고 있어 거의 살인적인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하였다.<sup>47</sup>

기초가격인 쌀 가격의 시장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을 실감할 수 있다. 쌀의 시장가격은 48~55원(2002년 2월), 80원(2002년 7월), 130~150원(2003년 2월), 240~250원(2004년 3월), 500원(2004년 8월)으로 상승해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10배 정도 올랐다. 이것을 시장환율의 변화와 연계해서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달러에 대한 북한 ‘원’의 시장환율(원/달러)은 220원(2002년 2월), 500원(2002년 12월), 670원(2003년 2월), 1,000원(2003년 12월), 2,000원(2004년 8월)으로 나타나 쌀 가격의 상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sup>48</sup> 시장환율에서의 상당한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쌀의 시장가격과 북한 ‘원’의 시장환율이 급격한 수준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7·1조치> 이후 북한에서의 초인플레이션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sup>47</sup> 탈북자 정보신문 『새동네』가 공개한 2004년 7월 26일 현재 청진지역 장마당 물가, 『연합뉴스』, 2004년 8월 31일.

<sup>48</sup> 『연합뉴스』, 2004년 8월 23일; 김정일 베이징대 교수는 북한의 시장환율이 300원(2002년 8월), 350원(2002년 10월), 600원(2004년 1월), 800~900원(2004년 6월) 수준이라 하였다. 『연합뉴스』, 2003년 6월 26일;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부 류승호 책임심사역은 논문 “북한의 경제개선조치 이후 환율 동향 및 시사점”에서 북한의 비공식환율은 150~200원(2002년 7월), 900원(2003년 5~6월), 1,000원(2003년 12월) 정도라고 하였다. 『연합뉴스』, 2003년 12월 19일.

<표 IV-1> 농민시장가격의 변화

| 구분   | 단위    | 2002년 2월 | 2002년 7월 | 2003년 2월     |
|------|-------|----------|----------|--------------|
| 쌀    | kg    | 48~55원   | 80원      | 130~150원     |
| 옥수수  | kg    | 20~32원   | 57.5원    | 75~85원       |
| 두부콩  | kg    | 60~70원   | -        | 180~190원     |
| 식용유  | kg    | 160~200원 | 300원     | 600~650원     |
| 계란   | 1개    | 10~13원   | 15원      | 22~25원       |
| 명태   | 1마리   | 100원     | 50원      | 300~400원     |
| 돼지고기 | kg    | 160~180원 | 290원     | 360~380원     |
| 미원   | 453 g | 180~190원 | -        | 420~430원     |
| 설탕   | kg    | 130~150원 | -        | 400~420원     |
| 휘발유  | kg    | 130~150원 | -        | 3,300~3,500원 |
| 경유   | kg    | 80~100원  | -        | 2,800~3,000원 |
| 비누   | 450 g | 60~70원   | 100원     | 165~175원     |
| 담배   | 국산    | 45~50원   | -        | 70~80원       |
| 이발비  | 1인    | 5~10원    | 10원      | 15~20원       |
| 환율   | 원/달러  | 220원     | -        | 670원         |

자료: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p. 110, 112.

## 나. 초인플레이션의 영향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사라지고 국내 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유통부문은 점차 약화되어 왔다. 반면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개인상업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유통 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오히려 사경제부문이 국가의 계획경제부문을 압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국가배급체계가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의 대부분을 농민시장과 같은 사적 상업유통망을 통해 조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이 <7·1조치>를 통해 저가의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배급받아 소비했던 일부 생필품조차 농민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03년 3월부터 북한 당국이 기존의 농민시장을 종합소비품 시장인 종합시장으로 개편하기 시작한 것은 <7·1조치> 이후 사적 상업유통망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새로 조성된 종합시장에서는 과거 농민시장에서 금지되었던 곡물과 공산품도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북한은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업유통의 일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sup>49</sup>

북한은 <7·1조치>를 추진하면서 “적어도 수개월이상물의 초기물자 확보 전망이 서지않고서는 안정된 가격에 의한 유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면서 소비물자를 확보하고 그것을 국영상업망에 투입하고자 하였을 것이다.<sup>50</sup> 그러나 북한 당국의 타산과 준비와는 달리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공급부족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가격 현실화와 생활비 인상에 따른 통화량 증가는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뒤늦게 북한은 통화량 환수를 위한 조치로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sup>51</sup>

국영상업망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인

<sup>49</sup> “나라에서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양에서도 구역마다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농산물만이 아니라 각종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이름을 고친 셈이다.” 『조선신보』, 2003년 4월 1일.

<sup>50</sup>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조치에 대한 잠정적해석(1),” p. 42.

<sup>51</sup> 북한은 2003년 3월 27일자의 내각홍보를 통해 인민생활공채 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함에 대하여-내각홍보,” 『로동신문』, 2003년 3월 29일.

플레이션은 대다수 북한 주민들에게는 지난 시기 경험했던 식량난에 버금가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다. 생활비의 상대가격 하락 및 국가 보조(배급)의 축소에 따르는 실질소득의 감소가 일회성이라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실질소득의 감소는 계속되는 진행형이다. <7·1조치>에 따른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은 예견되었지만, 누구도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생계비 지출부담이 <7·1조치> 이후 2년 동안 얼마나 급증했는지는 곡물(쌀과 옥수수)의 시장가격 변화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다. 북한 노동자 한 사람은 1일 600g의 곡물이 필요하고, 이 중 절반인 300g은 국정가격으로 국영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하자. 동시에 쌀과 옥수수를 각각 절반씩 국영상점과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노동자는 한 달에 쌀과 옥수수를 국영상점과 시장에서 각각 4.5kg씩 구입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하에 2002년 7월 노동자는 1달간 식량구입비로 총 891원이 필요했으나,<sup>52</sup> 2004년 8월에는 1달간 식량구입비로 총 3,915원을 지출해야만 한다.<sup>53</sup>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생활비가 평균 2,000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7·1조치> 이후 2년 만에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노동자는 생활비로 필요 식량의 절반도 구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sup>52</sup> 노동자는 국영상점에서 쌀 구입에 198원(4.5kg×44원), 옥수수 구입에 108원(4.5kg×24원)을 지출해야 하고, 농민시장에서 쌀 구입에 360원(4.5kg×80원), 옥수수 구입에 225원(4.5kg×50원)을 지출해야 한다.

<sup>53</sup> 2004년 8월의 쌀 시장가격은 500원, 옥수수 가격은 쌀의 60% 수준인 300원을 적용하면 노동자는 국영상점에서 쌀 구입에 207원(4.5kg×46원), 옥수수 구입에 108원(4.5kg×24원)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 종합시장에서 쌀 구입에 2,250원(4.5kg×500원), 옥수수 구입에 1,350원(4.5kg×300원)을 지출해야만 한다.



##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와 한계

### 1. 개별 주체의 경제생활

#### 가. 일부 경제주체의 소득 증대

〈7·1조치〉 이후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실질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일부 중산층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새로운 가격체계에 적응하면서 생활모습이 달라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54</sup> 『조선신보』는 평양시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 최세화(56) 부국장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7·1조치〉 시행 후 가족 생계비와 생필품 구입 방식 등 가정생활이 변화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최씨 부인 김옥련(52)씨가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평양의 한 국제호텔 요리사였던 김씨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서 전업주부로 있다가 2003년부터 3D직종인 평양승강기사업소에서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 이 신

<sup>54</sup> 『조선신보』, 2003년 6월 30일.

문은 “지난해 7월 1일 생활비와 전반 상품가격을 개정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일한 것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부양가족’으로 있던 여성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며 “가정주부들의 직장 복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씨 가족은 부인과 두 딸 등 네 식구로 이들이 받는 월급은 모두 합해 1만여원에 달한다. 평양의 주요거리의 개·보수 공사 책임자인 최씨 월급은 3,500원, 아내 김씨와 둘째 딸(금성청년출판사 직원, 22세)은 각각 2,000원과 1,500원이며, 큰 딸(평양호텔 간이매대 종업원, 25세)은 고정급 1,500원에다가 매대 매상고에 따른 성과급을 더해 매월 3,000원 이상 받는다. 네 식구 생활비는 월 1,600원이고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료는 400원을 넘지 않아 그만큼 저축 등 여윌돈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1kg당 44원인 쌀은 국영상점에서 구입하고 있고, 또한 필요한 생필품 구입을 위해 국영상점과 종합시장(옛 농민시장)을 쇼핑하는 맛을 느끼고 있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와 같이 평양에 사는 중산층 가정의 임금과 생계비 구조가 달라졌다고 한다.

최씨는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시장을 ‘암시장’이라고 하면서 나쁜 선전을 퍼트리는데 실상은 다르다”면서 “평양에 있는 시장은 평양시에서 상품가격을 정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영상업망과 시장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라며 “평양의 주요거리 현대화 공사가 끝나면 시장에서 수요가 큰 상품을 국영기업소에서 더 많이 생산해 이들 거리에 꾸며질 국영상점에 내다놓으면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동농장의 일부 농장원들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조선신보』는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지난해(2003년) 결산분배에서 분조원 1명당 평균 6만원(북한

원)의 현금을 받았으며 최고 분배 금액은 12만원이었다고 밝혔다.<sup>55</sup> 그리고 과거 총 수입의 50%를 토지사용료와 생산비용으로 국가에 납부했으나 지난해에는 중학생들의 노력지원은 받지 않고 대학생들만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일손은 농장내 직업반의 공동노력으로 대체해 상당액의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이다. 황해남도 안악군에서는 가족단위로 30만원 이상의 돈을 받는 농장원들이 있다고 한다.<sup>56</sup>

이렇게 일부 협동농장의 농민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대해 북한당국은 경계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7</sup> 협동농장들이 실리만을 앞세워 수매가격이 높은 작물만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편향적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리’에 대해 “국가적, 사회적 이익을 우위에 놓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속에서 자기 단위, 근로자들의 요구를 다 같이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장들이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농업생산물의 생산을 소홀히 한 채 수매가격이 높은 작물이나 기타 다른 생산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과 전반적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7·1조치> 이후 성과에 따른 분배가 적용되면서 일부 중산층 노동자 가족 및 협동농장 농민들의 수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노동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직장과 협동농장,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벌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sup>55</sup> 『조선신보』, 2004년 1월 23일.

<sup>56</sup> 『조선신보』, 2003년 4월 22일.

<sup>57</sup> 『경제연구』, 2004년 3호에서 재인용, 『연합뉴스』, 2004년 11월 7일.

북한당국의 입장은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소속 직장과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히 배합·운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나. 개별 경제주체의 책임 신장

과거 북한에서는 사회적으로 공짜 및 분배에서 평균주의가 많은 반면, 물질적 유인이 적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열성을 내어 일하기는 힘들었다. 그렇지만 <7·1조치>를 계기로 북한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들이 실제 자기가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생활비를 계산해 주도록 기준을 다시 정했으며 동시에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해 모든 물건은 제 가격으로 사서 쓰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 특히 개인은 경제생활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강요받게 되었다.

<7·1조치>로 인해 주민들은 임금 및 물가의 새로운 가격체계에 부응하여 경제생활을 운영해야만 한다. 물가 대비 생활비의 상대가격 하락, 저가 분배제의 사실상 폐지 및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르는 실질소득의 감소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번 조치가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은 것만은 사실”이며 “자기가 받은 로임으로 살림살이의 모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되게 되니 누구나 <실리>라는 문제를 자기 생활과 결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58</sup>

실질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는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비와 임금을

---

<sup>58</sup>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더 받기 위해 소속된 직장과 공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거나 부수적인 소득원을 발굴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는 새로운 가격체계 하에서 주어진 소득에 맞추어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성예산제약에 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을 통해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과 가계의 책임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가격기구의 작동과 시장경제 영역의 확대에 따라 주민들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sup>59</sup>

그렇지만 보다 능동적인 개인과 가계의 선택은 더 열심히 일하거나 추가적인 소득원의 발굴을 통해 기존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소비하고자 할 것이다. 물질적 유인의 강화로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기본생활비 이외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 열심히 일하고자 한다. 또한 실질소득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개인들은 직장 밖에서 보다 많은 부수입을 올리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의 소비품 시장 인정은 주민들의 시장거래를 통한 소득 확보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이 <7·1조치> 이후 여러 계층에 걸쳐 장사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며, 노점상이나 개인이 소유한 매점이 점점 많아져 사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sup>60</sup> 이와 관련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경제관료들까지 사석에서 “장사를 잘해 인민과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sup>59</sup> 박순성, “북한의 가격·배급제도의 변화와 전망,” p. 41.

<sup>60</sup> 카톨릭 구호단체 카리타스 홍콩지부의 카티 젤웨어 국장의 자유아시아방송(RFA) 회견(2003년 12월 19일) 내용, 『연합뉴스』, 2003년 12월 19일.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1</sup>

개별 경제주체의 책임과 역할 증대는 개인과 가계에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라 유통부문과 산업현장에서도 발견된다. 유통부문에서는 판매실적에 따라 보상이 지급됨으로써 물질적 유인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거리매대(가판점)에서는 판매경쟁이 벌어지고 있고,<sup>62</sup> 북한을 찾은 외국인과 판매원 사이에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산업현장에서도 <7·1조치> 이후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수입지표를 도입함으로써 실제로 기업소의 성과가 소속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sup>63</sup> 변수입지표의 특징 중 하나는 변수입에 기초하여 노동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배구조의 변화를 통해 분배의 평균주의를 개선하고 노동보수의 인센티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노동자들은 기업의 변수입이 클수록 분배 몫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 또한 증대할 수밖에 없다.

---

<sup>61</sup> 『중앙일보』, 2003년 6월 26일.

<sup>62</sup> 백화점에서는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만든 ‘은하수’와 신의주화장품공장의 ‘봄향기’ 제품이 품질 및 판매 경쟁을 하고 있고, 평양 시내 150여 개 거리매대의 음식판매경쟁도 불만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조선신보』, 2003년 12월 5일.

<sup>63</sup> 변수입(지표)에 대해서는 김상기, “변수입지표에 대한 소고,” pp. 3-11 참조.

## 2. 북한 경제구조의 변화

### 가.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7·1조치>를 단행하면서 북한은 가격 현실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북한 내부 문건은 “최근 수년간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가격사업을 옳게 실행하지 않아, 나라의 경제사업에 전반적으로 중대한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64</sup>

북한은 <7·1조치> 이전에는 국정가격이 농민시장가격보다 낮아서 장사행위가 성행하고, 국가에는 상품이 부족한데 민간에는 상품이 풍부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토로한다. 또한 농민시장에는 쌀을 원료로 하는 식료품에서부터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이 있는데 그 대부분은 낮게 책정된 국정가격과의 격차를 이용해 국가물자를 빼돌려서 농민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개탄한다. 생산은 국가가 하지만 상품과 돈의 대부분은 개인의 손에 들어간다면 가격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국가가격제정국은 <7·1조치>를 통해 국정가격을 결정하면서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허용해 온 각종 가격기준을 전부 없애고 모든 상품가격을 한 가지 기준, 즉 쌀 가격을 기준으로 통일시켰다. 동시에 향후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는데 따라 상품유통과 화폐유통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고정시키지 않고 능동적으로 계속 조절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북한은 국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농민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았

---

<sup>64</sup> 조선로동당출판사(2002.7),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p. 40.

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생산물의 가격은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가 조정한다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가가격제정국 관리의 발언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 멋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가격은 철저히 중앙과 지방 행정단위에서 조절토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65</sup> 따라서 국정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비록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북한이 계속 국가가격결정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시장가격기구는 불완전한 형태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가유통망인 국영상점을 통한 상품은 국정가격에 공급되지만 종합시장의 상품은 시장가격에 거래된다. 종합시장에서 가격은 한편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국이 가격에 대해 일정한 상한선, 즉 한도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쌀, 기름 등 주요 지표 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하고 이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 번씩 가격을 검토·조정하고 있다고 한다.<sup>66</sup> 그렇지만 한도가격이 설정된 품목은 평양 통일거리시장의 경우 19개에 불과하고,<sup>67</sup> 이들 품목은 실제로 한도가격을 넘어 거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상품공급이 제약된 상황에서 한도가격이 지

---

<sup>65</sup>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sup>66</sup> 『조선신보』, 2003년 12월 22일.

<sup>67</sup>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통일거리시장에는 쌀 등 19개 품목에 한도가격이 설정되어 있다. 『연합통신』, 2004년 8월 31일.

켜지는 것은 어려운 일로서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통일거리시장에서 한도가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2004년 3월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는 통일거리시장에 고시된 쌀값의 한도가격은 240원이지만 실제로 25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고 전한다.<sup>68</sup> 북한이 종합시장 내에 도매반을 운영하여 가격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은 한도가격을 넘어서 거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행정적 통제보다는 경쟁에 의한 견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69</sup> 따라서 종합시장에서는 사실상 시장가격에 의해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북한이 <7·1조치>에 따라 도입한 시장메커니즘은 국가 주도의 가격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격결정에 있어서 시장메커니즘의 작동과 국가의 통제 중 어디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는 김용술 무역성 부상의 <7·1조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시장원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기초가격에 대해 국가는 경제관리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정만 한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가격의 변동폭은 5~10% 정도로 예견하였다.<sup>70</sup>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7·1조치> 이후 가격결정에 있어서 시장메커니즘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해석해

<sup>68</sup> 『연합통신』, 2004년 6월 30일.

<sup>69</sup> 『조선신보』, 2004년 9월 7일.

<sup>70</sup> 일본 방문 중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이 비공개 세미나(2002.9.2)에서 강연한 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 기초가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초가격으로서 국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생산자와 구매자, 기업과 기업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쪽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의 경제관리체제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국가가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두 달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감각으로는 5%, 10% 그 정도에서는 가격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DI 북한경제리뷰』, 제4권 제10호 (2002.10), p. 46.

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쌀가격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고려한 생산원가, 국제시장가격, 국내 수급상황의 세 가지 요소는 가격결정기구가 단순히 국가 가격제정원칙에 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농민시장의 쌀가격에 맞춰 국정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나 모든 가격을 제 가치대로 계산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따른다면, 국가의 가격제정권한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가격을 국가의 조정과정을 통해 국정가격으로 추인하는 기능밖에 없는 명목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sup>71</sup>

결국 북한은 국가의 가격제정·통제 기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일 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초한 가격기구의 도입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해 물량동학에서 가격동학에 기초한 자원배분체제로 경제체제를 변환시켜 나가고 있다.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을 시장화와 거의 동일시한다면,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되면서 북한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

<sup>71</sup> 박순성, “북한의 가격·배급제도의 변화와 전망,”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전망』,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민족통일연구소·매일경제신문사 공동주최 학술회의(2002.10.11) 자료집, p. 37; 이와 관련 북한 국가가격제정국 관계자들의 주장은 음미해 볼 만하다. “가격이란 생산원가 그리고 수요와 공급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나라의 부담으로 정해진 월가만을 보았지요. 수요와 공급의 배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다 계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

## 나. 소득분배구조의 개편

북한은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때 노동량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소가 계획보다 더 수행했다고 하여 모두 똑같이 계산해 주었고, 협동농장에서도 일을 잘했건 못했건 가동일수만 보장하면 식량을 가족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했다고 지난 시기를 반성하면서 평균주의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다. <7·1조치>가 추구하는 방향은 “국가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제대로 실시하여 사람들이 실제 자기가 일한만큼 득을 볼 수 있도록 생활비를 개정했다”는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sup>72</sup> 다시 말하면 노동의욕 고취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소득의 분배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이러한 분배구조의 개편은 일차적으로 생활비의 차등 인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생산자 우대의 원칙에 따라 비생산부문 노동자의 생활비는 17배 정도 인상된 반면, 중노동생산부문 노동자의 경우에는 20~25배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별 기본생활비의 격차는 최고 3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비록 북한이 전반적 가격 인상에 맞추어 “인민 생활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생활비를 인상하도록 하였다”고 부연하고 있지만 생활비 차등 인상의 결과로써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누진노급제와 같은 성과급을 도입함으로써 소득의 분배구조에 있어 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 제도에 따라 일부 탄광에서는 탄부들의 평균 임금인 6,000원의 수 배 이상을 받는 탄부도 생겨났다고 북한은 자랑하고 있다. 협동농장에서

---

<sup>72</sup> 조선로동당출판사(2002.7),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p. 42.

도 일한 만큼, 벌어들인 만큼 분배한다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정착돼 연말 결산분배에서 최하위단위인 분조도 생산실적에 따라 분배를 받고 있으며 분조사이의 분배 몫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일부 협동농장의 경우 2003년 결산분배에서 농민들의 월 평균 분배몫인 2,300원의 2~4배까지 분조원에게 현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생활비의 차등인상과 실적 위주의 성과급 도입을 통해 북한은 평균주의 타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다. 평균주의를 배제하지는 것은 소득분배에 차등을 두어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명목소득에서의 증가와 개인별 차이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명목소득의 증가가 실질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때 노동의욕이 제고되고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비록 <7·1조치>를 통해 평균주의는 타파할 수 있었지만 소득분배구조의 개편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실질소득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7·1조치>를 통해 북한 주민 대부분은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정가격 대비 생활비의 상대가격 하락, 저가의 국가배급제 축소 및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등이다. 실질소득은 과거 국가배급제에 대한 의존이 높았던 계층,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계층, 성과에 따른 분배 몫을 많이 획득할 수 없는 계층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일부 극소수의 특수계층을 제외한다면 북한 주민의 상당수는 이런 계층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즉 <7·1조치>의 결과 실질소득분배는 극소수의 부유층과 대

다수의 빈민층으로 구성된 삼각형 구조의 아래 부분(빈민층)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상 가운데 하나로 도시빈민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sup>73</sup> 이런 도시빈민의 등장 내지 증가는 <7·1조치>의 부정적 파급효과 또는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세계식량계획(WFP)의 발표에 따르면 <7·1조치> 이후 공공배급제 가격은 35~50배 오른 반면 임금은 평균 20배 오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한다. 더구나 적지 않은 공장이 생산과 판매 부진으로 일시적으로 월급의 50~80%만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도시근로자 가구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70~80% 정도를 식품 구매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과 옥수수의 시장가격은 국정가격(공공배급가)의 3배가 넘기 때문에 부족한 식량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대도시 도심에 사는 저소득층은 집안에 텃밭마저도 없어 식량사정이 더욱 열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WFP는 2004년부터 도시빈민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Low Income Households)를 지원대상(도시지역 17곳에서 공공배급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일부인 366,000여 명)에

---

<sup>73</sup> 도시빈민 문제는 지난 2002년 북한을 다녀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 평가단이 우려한데 이어 2003년 9~10월 현지 평가에서도 ‘공공배급제 의존 저소득자’의 식량사정이 심각하다고 분석해 외부에 알려졌다. WFP의 릭 코르시노 북한담당 국장은 2003년 10월 말 대북 지원을 호소하면서 “북한의 제한적인 경제개혁으로 식량배급에 의존하는 도시지역에서 구매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도시지역 빈민 가정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2004년 1월 보고서에서 <7·1조치>가 빠른 인플레이션과 도시빈민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톨릭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홍콩지부의 카터 켈웨거 국장도 2003년 12월 북한을 다녀온 뒤 “도시 산업지대 주민들이 새로운 빈민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4년 2월 15일.

포함시켰다.

한편 <7.1조치> 이후 각 공장 및 기업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분배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sup>74</sup> 수익이 제고된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노임을 일정수준으로 고정하되 상금형태로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수익분을 분배해 왔다. 그렇지만 생산현장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한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임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같은 금액이라도 상금이 아니라 노동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계산·평가한 노임의 형태로 지급해야 제품의 부단한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다면서 일종의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임금체계의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

<sup>74</sup> 평양일용품공장 칫솔 직장장 리경일(39)은 “심지어 자기들이 벌어들인 것은 가능한껏 자기들이 먹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신보』, 2004년 8월 20일.

# 북한경제 변화 전망과 대북 정책과제

## 1. 북한경제 변화 전망

### 가. 시장화의 가속화와 계획부문

북한 당국에 의한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은 어떤 의미에서 시장화의 진전과 거의 동일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국가유통망과는 별개로 (종합)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 행위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자원배분이 국가계획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이 이제는 일정부분 국가의 통제 아래 시장기능에 의해 작동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1조치> 이후 북한의 생산과 유통부문에 계획기구와 시장메커니즘이 병존하게 되었고 아울러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공존하게 되었다.

시장화의 진전은 <7·1조치>와 함께 도입된 변수입 및 실적에 따른 분배와 결부되어 공장·기업소, 협동농장의 관리방식과 경영활동에 있어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공장과 기업소는 경영활동의 평

가방식이 생산량지표에서 변수입지표로 전환되면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었다. 따라서 공장·기업소는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고 수익을 소속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분배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되었다.

<7·1조치> 이후 공장·기업소가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다 확대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시장원리가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공장·기업소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기관본위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기업은 국가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수익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확대재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소이득금의 확충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한편 기업은 국가계획 이외의 판매수입을 통한 이윤 획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가계획의 수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을 통한 판매와 수익 창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현상은 이미 일부 공장·기업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부문의 위축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당국이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통해 공장·기업소의 국가계획 이외의 생산과 판매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하려 하겠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직은 북한 당국의 ‘원에 의한 통제’ 등을 통해 이런 현상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확대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협동농장의 경우에도 공장·기업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농장이나 소속 농민들의 이익만을 우선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7·1조치>를 취하면서 독립채산

제 강화, 농산물의 수매가격 인상, 토지사용료 제정 등과 함께 협동농장에 대해 생산물의 시장 처분권과 일정 부분 재배작물 선택권을 부여하고 실적에 따른 분배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동농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수매가격이 높은 작물이나 기타 생산물을 심어 ‘돈벌이’에 집착하는 현상들이 발흥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 현상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다. 협동농장은 국가·사회적 이익을 우위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는 가운데 농장과 농민들의 실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협동농장과 농민들은 자체 수입의 증대를 위해 매달리게 된다. 곡물의 시장판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농민들은 초과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국가수매를 줄여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협동농장의 실적분배원칙 확대와 시장화의 진전이 맞물리면서 가속화되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협동농장 관리방식에서도 빠른 전환을 가져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개인경작방식 및 가족영농제는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지난 시기 북한 사회는 일률적인 평균주의적 분배로 인해 개인의 성취동기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실질소득의 감소로 개인들은 소속 직장 밖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 ‘장사행위’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7·1조치> 이후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개편되면서 개인들이 장사를 통해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개인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고 소규모 개인 서비스업

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와 같이 개인들도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한 이익 창출에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생산 부문 이외의 상업, 유통, 서비스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화의 진전과 가속화는 <7·1조치>를 취하면서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취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일련의 경제개혁의 연장선에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을 것이다”<sup>75</sup>와 “종합시장의 운영은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심도와 폭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변이라 할 수 있다”<sup>76</sup>는 설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7·1조치> 이전까지 북한에서의 자원배분은 국가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기능의 역할 확대는 국가유통망의 상대적 위축을 불러 온다. 뿐만 아니라 시장화가 진전될수록 계획부문의 유통망인 국영상점과 당국에 의해 인정은 받았지만 계획부문 밖에 존재하는 유통망인 종합시장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국가유통망도 소속 노동자의 생활비 증액 요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화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화로 인해 계획부문의 상대적 위축과 함께 실질적인 축소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 것이다. 북한당국이 어느 수준까지 시장화를 용인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시장화의 가속화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

<sup>75</sup> 『조선신보』, 2003년 6월 16일.

<sup>76</sup> 『조선신보』, 2003년 12월 22일.

## 나. 배급제,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북한당국이 주민에 대한 저가 공급제를 포기함으로써 북한에서는 배급제도가 실질적으로 축소·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배급 제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민들은 공급량의 부족으로 구매에 제약이 따르지만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국정가격으로 운영되는 배급제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북한당국이 배급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하게 될 것이다. 배급제가 폐지되면 국가유통망을 통해 그나마 일부 물자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던 통로가 차단됨으로써 모든 식량과 생필품을 시장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생계비 지출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당국이 <7·1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축소된 배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자 생산과 공급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별경제주체들은 자체의 이익 증대에 골몰하게 된다. 때문에 국가계획부문을 위한 생산활동과 수매보다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한 생산활동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당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배급제의 역할은 계속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배급제의 지속적인 실질적 축소 경향은 결국 주민들의 생계비 부담 증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나갈 것이다.

만약 북한당국이 배급제의 실질적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정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부단히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계획부문의 생산물자는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고 국가유통망을 통해 판매된다. 생

산자의 공급가격과 구매가격이 국영상점의 판매가격에 맞추어 상향 조정됨으로써 국가유통망의 물자공급은 줄어들지 않게 되어 배급제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가격에 따라 배급(국정)가격이 조정되는 상황에서의 배급제는 주민들의 실질소득을 오히려 더욱 감소시키게 된다. 주민들은 식량을 비롯한 모든 제품을 시장가격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단한 가격조정으로 비록 공장·기업소, 협동농장의 수입 증대로 여기에 종사하는 소속 노동자, 농민의 분배 몫은 늘어나게 되겠지만 주민들의 생계비 부담 증대가 생활비의 인상분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만약 가격조정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비를 추가로 인상한다면 <7·1조치>와 마찬가지로 통화량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배급제의 포기나 국정가격의 부단한 조정 등 어느 것도 소득분배 구조의 불평등(빈부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될 수 없다. 한 가지 처방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시장의 물가 상승 압박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유통망과 시장에서 물자 공급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물자공급 능력이 확대된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할 수 없고 당분간 북한 자체의 물자공급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배급제와 관련해서 북한당국은 <7·1조치> 당시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공급계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7·1조치>는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았다. 동시에 국가유통망은 시장화의 진전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이에 따라 배급제도의 위축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배급제도, 인플레이션, 소득분배의 불평등 구조는 <7·1조치> 이후 진행되어 왔던 이러한 경로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7·1조치>로 주민들은 의식주에 대한 국가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경쟁과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평균주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적 의도는 달성하였으나 그 결과로서 소득분배구조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초래하였다. 대부분 주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한 반면, 실질소득이 증가한 일부 계층에서는 오히려 추가소득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격차는 그동안 북한 주민들 사이에 유지되었던 이념적 동질성을 파괴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간 사회·경제적 분절화를 확대할 것이다.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경우 평등이라는 이념에 기초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원리를 요구하게 된다.

## 2. 대북 정책과제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는 북한 경제체제가 우리 경제체제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만한 일이다.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야 할 것은 없겠지만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줄여 줄 수 있는 방향에서의 지원은 필요하다.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경우 북한당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시장화의 후퇴를 가져올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식량, 생필품 등에 대한 생산·공급이 확대되지 않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가격 현실화와 통화량 증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고 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북한에서는 새롭게 도시빈민이 생겨나는 등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른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계층간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북한 당국은 빈부격차의 확대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화의 진전에 제동을 걸지도 모른다.

국정가격의 현실화 이후 시장가격의 급등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품생산 및 공급의 원활화가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북한 당국의 생산증대 홍보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산업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어떠한 징표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북한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회복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성패는 북한 당국이 어떻게 물자공급을 늘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이 당면한 최대의 난제는 공급부족에 따른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박을 해소하는 일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를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우리의 대북지원 등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종합 시장에서 식량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 식량지원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차관방식을 통해 대규모로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는 외국산 쌀과 옥수수 50만 톤, 그리고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40만 톤의 국내산 쌀을 북한에 차관으로 지원하였다. 2004년에도 4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하고 육로수송을 통해 10만 톤은 제공된 상태이다.<sup>77</sup> 차관을 통한 식량이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시점에서 평양 등 시장에서의 쌀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 식량차관 제공시에는 북한의 식량가격 상승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그 시기, 지역, 지원량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식량 차관 제공과는 별도로 생필품에 대한 지원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원 물품이 북한 시장에서 직접 거래될 수 있도록 북한과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생산·공급능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생산 정상화와 직결된 것으로 농업, 경공업 분야에 대한 대북 지원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 정부는 북한의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비료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비료지원과 함께 각종 영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북한 농업부문에서의 생산량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경공업, 특히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기업소에 대한 원자재 제공 및 협력사업 등을 통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1차적으로 국가유통망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늘여나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sup>77</sup> 2002년과 2003년에 비해 2004년의 쌀가격의 상승이 더욱 가파른 것은 2004년 40만톤 대북 식량차관 지원이 차질을 빚어 북한에서 국가유통망을 통한 공급이 줄어들어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북한 농업부문과 경공업부문에 대한 대북지원 및 협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들 부문의 생산·공급 능력이 확대됨으로써 국가유통망을 통한 물자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로 시장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둘째, 경공업부문에서의 생산·공급능력 확대는 공장·기업소의 수입 증대를 가져와 소속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게 만든다. 결국 대북지원과 협력은 북한의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자·농민의 실질소득 증대를 가져와 <7·1조치> 이후 새롭게 야기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불평등구조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시장화 가속화와 전면적인 경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자공급을 확대하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 해외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제경제기구의 대북 지원 유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맺음말

전면적인 가격과 생활비의 대폭 인상 이후 북한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7·1조치>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가 있는가 하면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부정적인 변화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생활비의 차등 인상과 누진도급과 같은 성과급제의 확대 실시를 통해 북한은 평균주의를 타파하고 일한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어느 정도 확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저가 배급제의 실질적인 폐지는 경제생활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책임 신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일부 부문에서는 북한의 <7·1조치>가 의도한대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음도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메커니즘이 도입·확대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의 하나이다. 농민시장에서 종합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시장은 경제체제를 가격동학에 따른 자원배분체계로 서서히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시장메커니즘의 확산에 대해 북한은 매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시장의 확산이 급격히 진행되어 국가의 계획기능이 급속히 축소되는 것은 분명히 바라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을 두고 본다면 북한은 경제의 미래를 통제보다는 시장메커니즘의 확산에서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7·1조치> 이후 나타난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북한 당국은 공장·기업소에서의 변수입지표 도입, 협동농장에서의 실적분배원칙 확대 등을 통해 일부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과 실적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산업현장과 경제전반에서 뚜렷한 성장 동인이 감지되지 않고 있고, 거시경제지표 또한 <7·1조치> 이전과 비교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의도한 노동의욕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산업 현장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 계획을 통한 주요 생산물자의 공급이 <7·1조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도하지 않았던 커다란 부작용이 <7·1조치> 이후 등장한 것은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노동자·농민의 실질소득은 <7·1조치>에 따른 생활비의 상대가격 하락과 저가의 국가배급제 포기로 감소하였고, 이 조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화로 인해 계획부문의 상대적 위축과 함께 실질적인 축소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 것이다. 북한당국이 어느 수준까지 시장화를 용인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시장화의 가속화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7·1조치>를 통해 북한이 의도한대로 소득분배구조의 개편이 일어나 과거의 평등구조에서 불평등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분배구조의 개편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

되어 왔다. 동시에 초인플레이션은 대다수 주민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고, 일부 계층은 이미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북한당국은 배급제도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려 하지만 실리를 추구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확산됨으로써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의해 배급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경우 시장화의 후퇴를 가져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북한 당국은 빈부격차의 확대를 시정하기 위해 시장화의 진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연계된 것으로 생산·공급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북한사회의 잠재적 불안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를 가져오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인 식량 및 생필품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북한의 생산·공급 능력의 제고를 위해 농업과 경공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7·1조치>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 이상 이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7·1조치>를 실시하면서 북한은 공급 증대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소득분배구조의 개편과정에서 불평등구조는 심화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국내로

부터의 공급 증대가 어렵다면 한국을 포함하여 국외로부터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북한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박순성. 『북한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45년~1982년)』. 서울: 북한연구소, 1983.  
이철수. 『북한사회복지: 반복지의 북한』. 서울: 청목출판사, 2003.  
『경제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2. 논문

-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1).”  
『KDI 북한경제리뷰』 제4권 제10호 (2002.10).  
강일천·공성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통일문  
제연구』 제15권 2호 (2003 하반기).  
권태진. “북한의 농업실태와 농업발전 전략.” 『북한의 경제개혁에 따른 국  
제사회의 대북 농업협력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국제세  
미나(2003.3.11) 자료집. 2003.  
김상기. “변수입지표에 대한 소고.” 『KDI 북한경제리뷰』 제6권 제8호  
(2004.9).  
남성욱.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15권 2호 (2003 하반기).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변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3년 제1호.  
박순성. “북한의 가격·배급제도의 변화와 전망.”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  
일 - 현황과 전망』.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민족통일연구소·  
매일경제신문사 공동주최 학술회의(2002.10.11) 자료집. 2002.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경제연구』 2003년 제3호.

이철수. “7·1조치와 북한사회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2003 북한  
및 통일관련 신진연구 논문집(Ⅱ)』. 서울: 통일부, 2003.  
조선로동당출판사(2002.7).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앞당기자.” 『KDI 북한경  
제리뷰』 제5권 제1호 (2003.1).

### 3. 기타자료

『도쿄신문』

『로동신문』

『세계식량계획(WFP) 주간보고서』 33호 (2004.8.13).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국』(2004.2). 북한 월간지.

『조선신보』

『조선여성』(2002.8). 북한 여성 월간지.

『중앙일보』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         |                                     |       |    |         |
|---------|-------------------------------------|-------|----|---------|
| 2002-01 |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 전성훈   | 저  | 8,000원  |
| 2002-02 |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 손기웅   | 저  | 8,500원  |
| 2002-03 |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 이현경 외 | 공저 | 9,000원  |
| 2002-04 |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 서재진   | 저  | 8,500원  |
| 2002-05 |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 이우영   | 저  | 5,500원  |
| 2002-06 |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 최의철   | 저  | 6,000원  |
| 2002-07 |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 박영규   | 저  | 4,000원  |
| 2002-08 |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 전현준   | 저  | 4,000원  |
| 2002-09 |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 이교덕   | 저  | 4,000원  |
| 2002-10 | 김정일총서                               | 박형중 외 | 공저 | 10,000원 |
| 2002-11 | “불량국가” 대응 전략                        | 박형중   | 저  | 4,500원  |
| 2002-12 |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 정영태   | 저  | 4,500원  |
| 2002-13 |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 김병로   | 저  | 6,000원  |
| 2002-14 |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 최진욱   | 저  | 4,000원  |
| 2002-15 |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 김규륜   | 저  | 3,000원  |
| 2002-16 |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 김학성   | 저  | 5,500원  |
| 2002-17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 홍관희   | 저  | 5,000원  |
| 2002-18 |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김영운   | 저  | 7,000원  |
| 2002-19 |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 오승렬   | 저  | 4,500원  |
| 2002-20 |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 최수영   | 저  | 4,500원  |
| 2002-21 |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 박종철   | 저  | 4,000원  |
| 2002-22 |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 김학성 외 | 공저 | 8,500원  |
| 2002-23 |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 박영호   | 저  | 5,000원  |
| 2002-24 |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 허문영   | 저  | 4,500원  |
| 2002-25 |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 조민    | 저  | 4,500원  |
| 2002-26 |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3,500원  |
| 2002-27 |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 임강택   | 저  | 5,000원  |
| 2002-29 |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이론적 모델)       | 박영호   | 저  | 4,500원  |
| 2002-30 |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br>(접진적 시나리오) | 조한범 외 | 공저 | 6,000원  |
| 2002-32 |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 이현경   | 저  | 6,000원  |
| 2002-33 |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 김영춘   | 저  | 4,500원  |

|         |  |       |    |         |
|---------|--|-------|----|---------|
| 2002-34 |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 배정호   | 저  | 5,000원  |
| 2002-35 |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 최춘흠   | 저  | 3,500원  |
| 2002-36 |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 여인근   | 저  | 7,000원  |
| 2002-37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 김국신   | 저  | 4,000원  |
| 2003-01 |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 최의철   | 저  | 6,500원  |
| 2003-02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 이우영   | 저  | 5,000원  |
| 2003-03 | 『조선여성』 분석                              | 임순희   | 저  | 6,000원  |
| 2003-04 |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 서재진   | 저  | 6,500원  |
| 2003-05 |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여인근 외 | 공저 | 8,500원  |
| 2003-06 |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 이현경   | 저  | 5,000원  |
| 2003-07 |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 김영춘   | 저  | 4,000원  |
| 2003-08 |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최춘흠   | 저  | 3,500원  |
| 2003-09 |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 박영호 외 | 공저 | 8,500원  |
| 2003-10 |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함배와 북한 변화            | 박형중   | 저  | 7,000원  |
| 2003-11 |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 최진욱   | 저  | 5,000원  |
| 2003-12 | 북한의 후계자론                               | 이교덕   | 저  | 4,500원  |
| 2003-13 |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 박영규   | 저  | 5,500원  |
| 2003-14 |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 전현준   | 저  | 4,000원  |
| 2003-15 |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br>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 박형중 외 | 공저 | 10,000원 |
| 2003-16 | 통일예측모형 연구                              | 박영호 외 | 공저 | 8,000원  |
| 2003-17 |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3-18 |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 황병덕 외 | 공저 | 10,000원 |
| 2003-19 |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 임강택 외 | 공저 | 5,000원  |
| 2003-20 |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 최수영   | 저  | 3,500원  |
| 2003-21 |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 이금순   | 저  | 5,500원  |
| 2004-01 |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최의철   | 저  | 6,000원  |
| 2004-02 | A CRITICAL JUNCTURE                    | 최진욱   | 저  | 4,000원  |
| 2004-03 |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 임순희   | 저  | 5,000원  |
| 2004-04 |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5 |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 황병덕 외 | 공저 | 9,500원  |
| 2004-06 |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 김영춘   | 저  | 4,000원  |
| 2004-07 |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 홍관희   | 저  | 4,500원  |
| 2004-08 |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 대북 경험사업의 성공을<br>위한 정책과제 | 김영윤   | 저  | 7,500원  |
| 2004-09 |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 정영태   | 저  | 5,000원  |
| 2004-10 |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 김수암   | 저  | 6,000원  |
| 2004-11 |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 박형중 외 | 공저 | 10,000원 |
| 2004-12 |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 박영호   | 저  | 5,500원  |
| 2004-13 |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임강택 외 | 공저 | 6,000원  |

|         |  |       |    |        |
|---------|--|-------|----|--------|
| 2004-14 |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br>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 서재진   | 저  | 7,500원 |
| 2004-15 |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 손기웅   | 저  | 5,000원 |
| 2004-16 |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br>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 조한범   | 저  | 4,500원 |
| 2004-17 |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 여인곤 외 | 공저 | 9,000원 |
| 2004-18 |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 이금순   | 저  | 5,000원 |
| 2004-19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br>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 최수영   | 저  | 4,000원 |
| 2004-20 |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 이 석   | 저  | 9,000원 |

### 북한인권백서

|  |                   |    |         |
|--|-------------------|----|---------|
| 북한인권백서 2002  |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 공저 | 8,5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 공저 | 9,5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3  |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 공저 | 9,5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4  |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 공저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 공저 | 10,0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                                  |        |
|----------------------------------|--------|
|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 6,000원 |
|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 6,000원 |

### 학술회의총서

|                              |         |
|------------------------------|---------|
|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 4,500원  |
|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 7,000원  |
|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 6,500원  |
|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 5,500원  |
|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 6,500원  |
|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 5,000원  |
|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 5,500원  |
|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 10,000원 |
|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 10,000원 |

|         |                         |         |
|---------|-------------------------|---------|
| 2004-03 |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 8,000원  |
| 2004-04 |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 7,500원  |
| 2004-05 |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 5,500원  |
| 2004-06 |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 6,500원  |
| 2004-07 |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 10,000원 |

## 논 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 8,5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 9,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 10,000원 |

## 영문초록

|        |                             |         |
|--------|-----------------------------|---------|
| 2003-1 | KINU Research Abstracts '02 |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         |                             |                 |
|---------|-----------------------------|-----------------|
| 2002-01 |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 7,500원          |
| 2002-02 |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 10,000원         |
| 2002-03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
| 2002-04 |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
| 2002-05 |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
| 2002-06 |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
| 2002-07 |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
| 2002-08 |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
| 2002-09 |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
| 2002-10 |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
| 2002-11 |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

|         |  |       |    |         |
|---------|--|-------|----|---------|
| 2002-12 |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 조은석 외 | 공저 | 10,000원 |
| 2002-13 |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 길은배 외 | 공저 | 9,000원  |
| 2002-14 |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 김제인 외 | 공저 | 10,000원 |
| 2002-15 |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 신동완 외 | 공저 | 10,000원 |
| 2002-16 |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 김동규 외 | 공저 | 8,000원  |
| 2002-17 |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       |    | 10,000원 |
| 2003-01 |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       |    | 10,000원 |
| 2003-02 |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 허문영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3 |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 최진욱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4 |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 제성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5 |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한만길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6 |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 이상만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7 |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이금순 외 | 공저 | 10,000원 |
| 2003-08 |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 박영규 외 | 공저 | 9,000원  |
| 2004-01 |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       |    | 10,000원 |
| 2004-03 |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 박종철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4 |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 제성호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5 |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 고정식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6 |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 양문수 외 | 공저 | 10,000원 |
| 2004-07 |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 이금순 외 | 공저 | 8,500원  |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         |                                     |          |
|---------|-------------------------------------|----------|
| 2002-01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국신, 이현경 |
| 2002-02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 최진욱, 임강택 |
| 2002-03 |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 서재진, 김수암 |
| 2002-04 |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 최춘흠      |
| 2002-05 |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 서재진      |
| 2002-06 |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 신상진      |
| 2003-01 |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          |
|         |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 신상진      |
| 2003-02 |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 임강택      |

|         |   |                         |
|---------|---|-------------------------|
| 2003-03 |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 최의철, 임순희                |
| 2003-04 |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 이현경, 박영호                |
| 2003-05 |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 배정호                     |
| 2003-06 |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 박형중, 정영태                |
| 2003-07 |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 개최 동향 분석                       | 박형중                     |
| 2004-01 |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
| 2004-02 |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 북한연구실                   |
| 2004-03 |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 조한범                     |
| 2004-04 |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 박형중                     |
| 2004-05 |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 최의철                     |
| 2004-06 |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 전성훈                     |
| 2004-07 |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 여인곤                     |
| 2004-08 |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 이석, 최진욱                 |
| 2004-09 |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 최의철, 임순희                |
| 2004-10 |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 이교덕, 신상진                |
| 2004-11 |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영춘                     |
| 2004-12 |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 전성훈                     |
| 2004-13 |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
| 2004-14 |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 김영춘                     |
| 2004-15 |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 김영운, 박정란                |
| 2004-16 |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 김수암, 이금순                |
| 2004-17 |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박영호, 김국신                |
| 2004-18 |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김국신, 박영호                |
| 2004-19 |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 전병곤                     |
| 2004-20 |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Studies Series

|         |  |                                  |
|---------|--|----------------------------------|
| 2004-01 |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 Kyo Duk Lee                      |
| 2004-02 |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 Hyeong Jung Park                 |
| 2004-03 |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 Jae Jean Suh                     |
| 2004-04 |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
| 2004-05 |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 Hyun Joon Chon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